등록번호	노인장애인과-1763
등록일자	2025. 1. 9.
결재일자	2025. 1. 9.
공개구분	비공개(5)

	주무관	장애인지원 팀장	노인장애인 과장	복지국장	부시장	
					전결 2025. 1. 9.	
	오병수	김정미	문성오	옥미연	정석원	
	협 <i>3</i>	5 T.F				
		_ //I			기획예산실	장 신현숙
1					에사틴장	저제종

시민중심 희망의 거제

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

- 사업기간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연중)
- 지원대상: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(유형별 지원시간 차등 지원)
- 예 산 액: 619,121천원(시비100%)
- O 사 업 량: 68명
- 지원내용: 활동보조(신체·가사·사회활동지원)
- 제공기관: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. 거제시장애인부모회. 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거제시지회,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
- 변경사항
 - 단가 인상: 2024년 16.150원 → **2025년 16.620원** ※「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 반영
- 향후계획
 -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사업 지원대상자 일제 조사 : 5월말 까지

노인장애인과 (장애인지원팀)

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

국·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※ 국비(장애인활동지원)·도비(장애인도우미지원)지원 확대 됨에 따라,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기 선정되어 지원 중인 68명에 대한 서비스 임

I 현 황

○ 서비스 대상 현황

(2024. 12. 31. 기준, 단위 : 시간, 명)
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계	이용시간						비고	
1 1	/7II	20 30 40 50 60 70 80					714		
인원	68	3	7	38	2	0	8	10	자격취득자

○ 이용인원 및 사업비 집행 현황

20	2022년 2023년 2024년(~11월)		비고			
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1 1177
71	485,129	68	476,992	68	488,621	·24년 12월분 : 미포함 (25년 1월중 정산예정) ·자격취득자 중 실제 서비 스 이용인원

Ⅱ 사업개요

○ 법적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5조(활동지원급여의 지원)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사업기간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- 지원대상: 장애인활동지원사업(보건복지부) 및 장애인도우미지원(경상남도) 대상자(독거 및 준독거) 중 <u>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</u>소진 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
- 서비스 제공기관: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동일(4개소, 방문목욕 제외)
 - *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,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, 거제시장애인부모회, (사)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
- 서비스 제공시간: 가구특성별, 사회활동참여 유형별 기준에 따름
- 사 업 량: 자격유지자 68명(2024. 12. 31. 기준)
- 서비스내용
 - 신체활동지원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유지, 식사도움, 실내이동
 - 가사활동지원: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
 - 사회활동지원: 등·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- 예 산 액: 619,121천원(시비100%)
 - 사회보장정보원 예탁(바우처사업비): 615,121천원
 -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위탁업무비(사회보장정보원): 4,000천원

Ⅲ 지원 내용

- 2025년 시추가 지원사업 지원액 및 서비스 지원 단가
 - 월 한도액 산정 : 가구특성별, 유형별 사유에 따라 차등지원

구 분 (지원시간: 평일기준)	지원액 (단위: 원)	서비스 지원 단가 (시간당)	비고		
20시간	332,400		※ 가산단가 적용기준		
30시간	498,600		· 22시 이후~6시 이전 심야 서비스 제공		
40시간	664,800		·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		
50시간	831,000	(평일) 16,620원 (가산) 24,930원	의한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하는		
60시간	997,200		경우(근로자의 날 포함)		
70시간	1,163,400		※ 지원시간 산정기준		
80시간	1,329,600		· 기구특성별, 시회활동 참여 유형별 시유 중 유리한 조건(1개 사유) 단일선택 이용가능		

- ※ 「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및 장애인활동지원시업 단가 준용
- ※ 본인부담금 : 없음

【참고사항】

- 2025년 국·도비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
 - 지원금액: 평일 시간당 16,620원, 가산단가 24,940원
 - * 인건비는 시간당 단가의 75% 이상, 그 외는 기관운영비로 사용
 - * 인건비: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
 - * 기관운영비: 활동지원사 퇴직금, 4대 보험료, 법정수당 등 포함
- 2024년 국·도비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: 평일 16,150원, 가산 24,220원

₩ 세부 추진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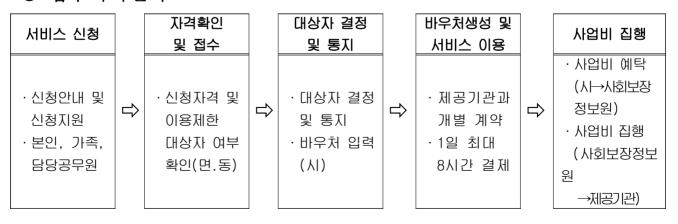
○ 결제방식

- 바우처 결제: 시에서 결정한 지원량에 따라 이용자에게 바우처가 생성, 서비스 제공 후 실시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함 - 예외지급 : 카드 발급 지연·분실 등의 사유로 정상결제 불가 시 전자 바우처 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하여 예탁금에서 지급

O 서비스 제공기준

-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(독거 및 준독거)을 이용하 고 있는 자로서, 3개월 이상 월 제공시간 한도를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 간이 부족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자
-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
-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시 추가사업 이용 불가, 단 와상사지마비 등 활동에 제한이 심 한 경우 가정 방문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이용 가능
- ※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중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독거 및 준독 거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에 시 추가 시간 이용 가능
- 지원기준 : 가구특성별, 사회활동참여 유형별 사유에 따라 차등 지원 (월 최소 332,400원 ~ 최대 1,329,600원)
- 당월 미사용분 익월로 이월하여 사용 불가
-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 가능 (단, 독거(와상)장애인 및 심한 발달장애인에 한하여 예외적용 가능)

O 업무처리절차



○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급여비용 지급: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
 - ·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장애인활동 시 추가지원 급여비용 지급 (바우처결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은 금액 내에서 제공 기관에 비용을 지급함)
 - ·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를 제공기관에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·사회보장정보원 매월 집행내역을 시에 통지
- 예외지급 : 당월 바우처 미결제분에 대해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청구 → 시는 신청사항 검토 후 승인 → 예 탁금에서 지급

○ 서비스 종료

- 종료 시기
 -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
 - ·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
 - · 이용자의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
 - · 이용자가 부정 수급한 경우(부정수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제한)
- 종료 통지
 - ·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즉시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
 - ·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 해지에 대해 통지

○ 제공기관 감독

- 서비스 질 저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(반기별)
- 장애인활동지원·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점검 시 동시 점검
- 부정사례 적발 시 조치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 준용

V 향후계획

-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일제조사 : 5월말까지
 - ⇒ 조사결과 활용 수급자격 및 급여시간 변경 등 반영
-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사업 위탁업무비 지급(한국사회보장정보원) : 2025. 1. 17.일 한
- 국·도 유사 사업 제공시간 확대에 따라, 기존 대상자만 운영(사업 정 비 예정)
- 붙임 1. 시 추가사업 제공시간 산정 기준 1부.
 - 2. 시 추가사업 관련 서식 각 1부. 끝